

기안번호 130	기안용지 (전파번호 420)	전결구 조항	장전결사항
-------------	--------------------	-----------	-------

처리기한 1968. 7. 3	기안처 서울특별시	기안자 김민행	결재 시강길
보낸년한	기안과 6. 6. 6	결재일자	시강길

보 조 기 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	----------------	-------

업 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정 수 참	유신조 서울특별시	정 서	과대장정리

제 목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제1안 (내부결재)

개동령 산책로 노거수 보호계획에 관한 서울특별시
 산림청에 제8호 (68.12.30)에 의해 각시인 노거수의
 거수 (명부 산부 강산부 정차부 호안부) 전부 종착부
 노수 보호 중요 가치가 있어 땔전대상 수목을 서울특별시
 로 지정 지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고시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보호수로 지정보호하라고 하는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 호
 서울특별시

시행시 교육의 2차수 및 3차수를 오로지 관리코자 다음과 같이 시행시 보호수로 지정함의

시행시 보호수 지정대우로

(별첨 부록과 같은)

1968. 7. 31
서울특별시

제3안 (4항)

수선 수선지정소

별첨 지정

지정소 산업국장, 수선국장

제우 등

1. 수선(100-202 (88. 4. 28)에 의거 도시 보호한
문장 별첨 교육부와 같이 시행시 보호수로 지정함의 수선
주(관리자로함) 및 관할동장에게 취지를 통지할 것이며

2. 문장 관리 보호수 별첨 보호관리요령에 의거 지정장

제임하에 취지 보호할 것

제우 1. 고시준 수선부

2. 시행시 지정보호수 관리요령 1부

구분지 지정 1~2

제4안 (4항)

수선 상부 지정

별첨 산업국장

제우 시행시 보호수 지정고시

별첨과 같이 고시됨에 시도에 계수하여 수선을 바

함의

제우 시행시 고시준 호수부

제1안 (시행안)

수신 신청권장

출신 수광

참고 신청권장

주요 신청서 보호수 지정

1. 신청 120-2424 () 12. 20) 호외 관련됨 4가
2. 각서인 2개수 및 2개수 불균형을 완화 관리요강에 의거
지정된 2개수외에 별도로 10군가치가 있는 것은 신청
서제 보호수로 추가로 지정 보호관리 하. 있는 것을 보호종 4가
점유 신청 특별사건에 호수인 1부 불

서울시 도로수거장료

차량번호	소재지	구종	구형	구비	구경	오차리구비	비고
3	종로구 경동 4사	노면거점	500	20	100	종로구 경동	
4	서구 남산	.	500	20	140	.	
5	.	.	500	20	100	.	
6	종로구 예장동 4사	은행거점	500	20	160	종로구 경동	
7	동대문구 경동 1사	노면거점	300	20	150	동대문구 경동	
8	북동 1-1	.	500	20	150	.	
9	.	노면거점	500-550	20-25	200-250	.	
10	성동구 경동 103	노면거점	250	20	250	성동구 경동	
11	.	.	350	15	300	.	
12	서대문구 221	한가주	250	15	250	.	
13	북대문구 228	북대문주	500	20	140	.	
14	4동 128	노면거점	500	15	300	.	
15	308	은행거점	500	20	300	.	
16	신정동 196	노면거점	300	20	170	.	
17	역삼동 21	노면거점	300	20	180	.	
18	대리동 22	은행거점	500	20	200	.	
19	신정동 (별장)	노면거점	300	20	150	.	
20	.	.	350	15	110	.	
21	영구동 56	.	400	20	300	.	
22	.	.	450	20	350	.	
23	서문동 102	한가주	250	15	210	.	
24	성동구 경동 200	은행거점	250	20	200	성동구 경동	

계 번호	소재지	구 종	구 형	구 수	구 비	구 비	비 고
28	신구정동 56-13	느리나무	200	15	100	신구정동	
29	· · · 57	·	250	24	70	·	
30	· · · 100	·	250	20	110	·	
31	· · · 111	·	200	15	120	·	
32	· · · 111	·	200	10	100	·	
33	· · · 111	·	250	20	100	·	
34	· · · 111	·	250	20	100	·	
35	· · · 111	·	250	20	100	·	
36	· · · 111	·	250	20	100	·	
37	· · · 111	·	250	20	100	·	
38	· · · 111	·	250	20	100	·	
39	· · · 111	·	250	20	100	·	
40	· · · 111	·	250	20	100	·	
41	· · · 111	·	250	20	100	·	
42	· · · 111	·	250	20	100	·	
43	· · · 111	·	250	20	100	·	
44	· · · 111	·	250	20	100	·	
45	· · · 111	·	250	20	100	·	
46	· · · 111	·	250	20	100	·	
47	· · · 111	·	250	20	100	·	
48	· · · 111	·	250	20	100	·	
49	· · · 111	·	250	20	100	·	
50	· · · 111	·	250	20	100	·	
51	· · · 111	·	250	20	100	·	
52	· · · 111	·	250	20	100	·	
53	· · · 111	·	250	20	100	·	
54	· · · 111	·	250	20	100	·	
55	· · · 111	·	250	20	100	·	
56	· · · 111	·	250	20	100	·	
57	· · · 111	·	250	20	100	·	
58	· · · 111	·	250	20	100	·	
59	· · · 111	·	250	20	100	·	
60	· · · 111	·	250	20	100	·	
61	· · · 111	·	250	20	100	·	
62	· · · 111	·	250	20	100	·	
63	· · · 111	·	250	20	100	·	
64	· · · 111	·	250	20	100	·	
65	· · · 111	·	250	20	100	·	
66	· · · 111	·	250	20	100	·	
67	· · · 111	·	250	20	100	·	
68	· · · 111	·	250	20	100	·	
69	· · · 111	·	250	20	100	·	
70	· · · 111	·	250	20	100	·	
71	· · · 111	·	250	20	100	·	
72	· · · 111	·	250	20	100	·	
73	· · · 111	·	250	20	100	·	
74	· · · 111	·	250	20	100	·	
75	· · · 111	·	250	20	100	·	
76	· · · 111	·	250	20	100	·	
77	· · · 111	·	250	20	100	·	
78	· · · 111	·	250	20	100	·	
79	· · · 111	·	250	20	100	·	
80	· · · 111	·	250	20	100	·	
81	· · · 111	·	250	20	100	·	
82	· · · 111	·	250	20	100	·	
83	· · · 111	·	250	20	100	·	
84	· · · 111	·	250	20	100	·	
85	· · · 111	·	250	20	100	·	
86	· · · 111	·	250	20	100	·	
87	· · · 111	·	250	20	100	·	
88	· · · 111	·	250	20	100	·	
89	· · · 111	·	250	20	100	·	
90	· · · 111	·	250	20	100	·	
91	· · · 111	·	250	20	100	·	
92	· · · 111	·	250	20	100	·	
93	· · · 111	·	250	20	100	·	
94	· · · 111	·	250	20	100	·	
95	· · · 111	·	250	20	100	·	
96	· · · 111	·	250	20	100	·	
97	· · · 111	·	250	20	100	·	
98	· · · 111	·	250	20	100	·	
99	· · · 111	·	250	20	100	·	
100	· · · 111	·	250	20	100	·	

지점번호	소재지	수용	수량	구분	수량	보통외국인과	비고
68	마로구청현동 산2-2	느리나무 개나무	200	20	100	마로구청현	
69	영동로구청현동 산30	은행나무	1,000	250	250	영동로구청현	
70	신월동(고양향)	고나무	400	20	60		
71	계문동 139-20	느리나무	300	30	100		
72	강현동 110	은행나무	100	20	100		
73	신월동 산 11-1	개나무	600	25	100		
74	방배동 246	느리나무	500	20	200		
75	서로동 산 1가	향나무	1,000	15	150		
76	소갈동	고나무	500	2-10	50-60		
77	서로동 산 1가	은행나무	800	25	200		
78	서로동 산 1가		800	25	50		
79	서로동 산 1가	고나무	120	10	20		
80	서로동 산 1가		150	5	100	서로동구현	
81	서로동 산 1가	느리나무	150	20	150		
82	권현동 264	고나무	200	15	20		
83	서로동 산 1가		200	15	20		
84	우남동 203	느리나무	200	15	150		
85	권현동 227-2	고나무	150	15	20		
86	신월동 196	향나무	200	15	55		
87	봉천동 산 2가	느리나무	200	10	120		
88	경동 (계곡향)	개나무	350	15	200		
89	봉천동 산 2가	느리나무	200	15	150		
90	서로동 산 2가		200	15	130		

시공시지공시호수판의요령.

1. 목적

시공시지의 기법 (명부, 수부, 각부, 점자부, 호안부, 기형부, 수부) 이다. 또한 사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호수판의

가 호수판의 개념은 구경장이 된다

나 호수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수부의 근부도선이 있을 때는 그 근부까지 물도를 하여 수부를 호수판, 수부의 수부까지 물도를 한다

2) 수부의 줄이나 가지가 잘려있을 때는 교정을 하여 이면, 상해, 조지, 인계적 부리 등으로 일부수부가 고사되어 수부생리상 수부가 근부까지의 근부수부를 수제하여 교정을 하여 재식한다

3) 수부의 절부 및 상부는 수종 (木種)에 따라 수부 수를 잘라 구제한다. 수제 및 수제 수부 수에 따라 다르다

4) 동물의 치상 인계적상치 또는 기생리해충으로 간부 (干부)가 부리 또는 부부적으로 고사되었을 때는 교정 또는 절할 수를 하여야 한다

5) 수부의 병충리해가지로서 구제가 불가능한 수의 고사 가지라도 보존하여야 한다

6) 수부의 수부수변의 복수병으로 인한 지료면은 수부수변의 수리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리

이 점 거취등으로 팀이름과

(7) 수무이 주장해등으로 주장내부크개를 받았을때는
총장(또는) 이주회 좌소를 활의연에 적서
총장에 들고 진흥으로 일제클우크가야야하야
외무영개의 리해를 받았을때에는 원인을로
능력을 슬로구제하여야 한다

(8) 수무의 강부에 방적이 성결한때에는 부추우를
제거하여 소독후 콘크리트. 로사 진흥(또는)
하여야 한다 가나 공동부기가 클기외부에 드를
되었을때 단방을 병행하여야 한다

(9) 수무의 모호구역내에는 전가로외에 권도성도
총장이라 시정들을 가행하여 시정되어 미완
총장 내는 모든 기시정들을 제거하. 언주나 구기
현상이 깨끗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수무의 클기나 가리에 리구를 수할때에는 리구나
나우사이에 가나나 모임을 하여야 한다

3. 수행방식

가. 모호수무이 인점수무으로 가어는 성장의 장해를 구
수무이 일할때는 일제제거한다

나. 모호수의 주장 시비는 추비 30이양 근비 N.p.2. Dec (2)
4:1) 로 배합그양을 수반구기 직기 기변의 약
20cm의 거상구를 크는 배면 로준 도는 반부
에 시비하여야 한다

다. 모호의 안. 처의 드를을 병기하기 위하여 리로클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라. 병중해의 발생구려 또는 발생가능성이 커갈수록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중해를 미연방지하여야 한다

4. 오로수 지정해제

지정수부으로서 지정의 가치를 상응하거나 관계상 기타 특수사정이 있을시에는 시술특별시정은 그지정해제를 위등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구청장은 통상 및 수부의 소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지정해제는 구청장의 보고에 의한다

5. 인가사항

지정오로수의 수위 및 현상의 변경 또는 오로에 영향을 미칠구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시술특별시정의 승인후에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6. 오로관리 의무

구청장은 오로관리 의무의 권리와 수부의 소위사 및 동업에 기타 오로관리에 할수있는 전체적인 것은 구청장이 책임진다

7. 료수

구청장은 지정수에 대하여 지체없이 발전에 이와 같이 지정관을 지정#오로수 수위에 정량 료수가 하여야 한다

8. 기록부의 비치

구청장은 지정오로수에 대하여 별기 기록부를 지정번호별로 구분하고 다른 도우를 비치한다

가 슬픔도

나 지극도

다 우수도

라 수간 (건판은 문형에 제정)

마 가라 찬고 수간

9. 9고 수간

가 정기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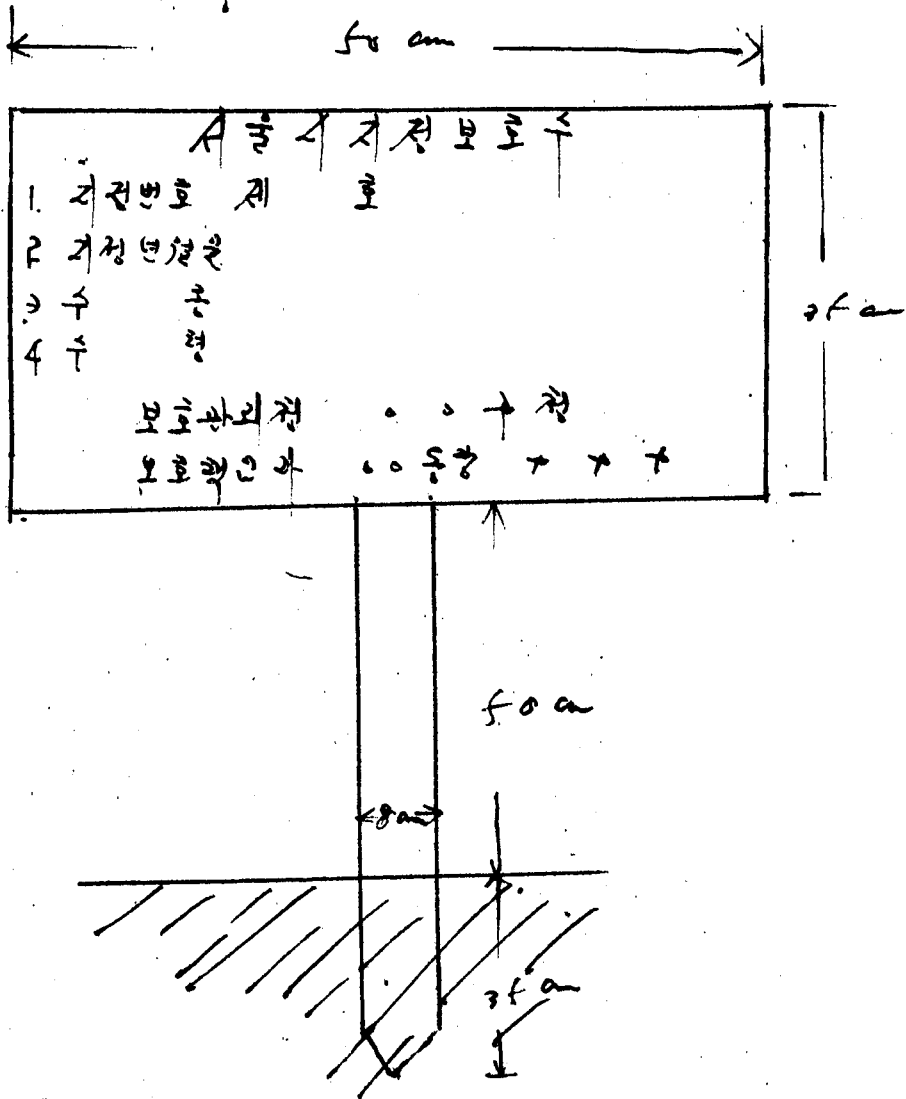
구정판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오호부의 상환을

9고한가

나 수시오고

저정오호수가 오호부 정권 중도외였거나 저명부인
영출해나 취하를 받았을때는 그 상환은 수오
한가

골 기 화



기원번호는 기원번호에 따라 다르다.

A 등시외환호주대강

외환번호 26.

수출명	거주명	외환번호	
외국취급	환리사수리	외국취급	
성명	성명	성명	
소재지	외 환		외 부
			외 부

구 성

수 장	수 령	수 조	환리사수리	외국취급	외국취급	성명	성명

외환호주대강

트 리	트 리	트 리	비우도	외환호주대강	외환호주대강	외환호주대강	외환호주대강

외환호주대강

외환호주대강

외환호주대강